

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7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9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23. 6. 11.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2조제1호)
- 나. 지명위원회의 정원, 위원장·부위원장, 위원에 관한 기준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회의 개최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기준을 정함(안 제6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가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-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 평가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것을 권고하여 반영함(가족복지과-38788호, 2023. 10. 4.)
- 라. 입법예고: 2023. 9. 18. ~ 10. 10.(22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88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명”을 “그 밖에 지명”으로 한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 중 “7명”을 “10명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사람 중 3명 이상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하되,”를 “하되, 두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의하고”를 “개의(開議)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변경으”를 “변경 및 폐지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해야”로 한다.

제11조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88조</u>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<u>지명의 제정·변경 또는 조정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지명에 관한 중요사항</u>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 지명</u>-----</p>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7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.</p> <p>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위원</u> 중에서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10명</u> ----- ----- <u>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다.</u> ② ----- ----- ----- <u>지명업무 담당</u></p>

호선한다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(생략)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

제4조(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(생략)

제6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

부서장으로 한다.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사람

제4조(임기 및 해촉) ① -----
----- 하되, 두 차례만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
----- 않다고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7조(지명의 조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경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복 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, 명

----- 통지해야 -----.

-----.

③ -----
----- 개의(開議)하고

-----.

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회신과 서면심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.

제7조(지명의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1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---- 변경 및 폐지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회의록) -----

----- 보고해야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 -----

----- 그러지 않
다.

근 거 법 규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

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

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정비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 및 기금상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3. 작성자

- 소 속: 민원지적과
- 직 급: 시설7급
- 성 명: 남다름
- 연락처: 052)290-3533